

[별표]

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

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「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내규」에 따른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, 위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신청권자

- 감사를 받는 직원 본인 ※ 부서장 의견 첨부
- 감사를 받는 부서의 장

○ 신청기간: 감사결과 처분이전

○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

-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,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
-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
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
 -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
 -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

※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

1. 고의·중과실,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
2.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
3. 위법·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
4. 공금을 횡령·유용한 경우
5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을 수수한 경우
6.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
7. 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 범죄의 경우
8.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·부당행위

